

#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

## 1. 개정 이유

2.6GHz대역 및 700MHz 대역의 LTE FDD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에 대비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4조(이동통신용 무선설비) 4항에 2.6GHz대역 LTE FDD 기술기준 주파수 범위 확대(안 제4조4항1호다목의5)
- 나. 700MHz 대역 LTE FDD 기술기준 추가(안 제4조4항1호다목의6, 제4조4항2호바목, 제4조4항3호나목, 제4조4항4호바목, 제4조4항6호바목)
- 다. 제4조(이동통신용 무선설비) 4항6호나목의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중 안테나공급전력을 “2W”로 개정(안 제4조4항6호나목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전파법 제45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●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-00호

「전파법」 제45조(기술기준),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(권한의 위임·위탁)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(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-00호)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6년 0월 0일

국립전파연구원장

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4항1호다목의5 중 “2500 MHz~2540 MHz”를 “2500 MHz~2550 MHz”로, “2620 MHz~2660 MHz”를 “2620 MHz~2670 MHz”로 한다.

제4조4항1호다목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) 728 MHz~748 MHz(사업자 방향), 783 MHz~803 MHz(가입자 방향)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는 점유주파수대역폭 5 MHz, 10 MHz, 15 MHz 또는 20 MHz를 사용할 것

제4조4항2호바목1의 표에 “1호다목6)의 경우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호다목6)의 경우	728~748 MHz	-96 dBm 이하	100 kHz
	753~771 MHz	-48.3 dBm 이하	100 kHz

제4조4항2호바목2의 표에 “1호다목6)의 경우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호다목6)의 경우	728~748 MHz	-88 dBm 이하	100 kHz
	753~771 MHz	-48.3 dBm 이하	100 kHz

제4조4항2호바목3의 표에 “1호다목6)의 경우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호다목6)의 경우	728~748 MHz	-88 dBm 이하	100 kHz
	753~771 MHz	-48.3 dBm 이하	100 kHz

제4조4항3호 “기지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발사조건”을 “기지국 수신장치의 조건”로 한다.

제4조4항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3. 기지국 수신장치의 조건

#### 가. 부차적 전파발사 조건

주파수대역	부차적 전파발사 평균전력	분해대역폭
30 MHz~1 GHz	-57 dBm 이하	100 kHz
1 GHz~12.75 GHz	-47 dBm 이하	1 MHz

나. 수신 선택도는 753 MHz 이상 771 MHz 이하에서 88.5 dB 이상일 것  
제4조4항4호바목1의 표에 “1호다목6)의 경우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호다목6)의 경우	470 MHz~703 MHz	-26.2 dBm 이하	6 MHz
	758 MHz~773 MHz	-32 dBm 이하	1 MHz
	773 MHz~803 MHz	-50 dBm 이하	1 MHz

제4조4항6호나목의 단서 중 “제4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”을 “2 W 이하 일 것”로 한다.

제4조4항6호바목1의가) 표에 “1호다목6)의 경우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호다목6)의 경우	728~748 MHz	-96 dBm 이하	100 kHz
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

제4조4항6호바목1의나)표에 “1호다목6)의 경우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호다목6)의 경우	728~748 MHz	-88 dBm 이하	100 kHz
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

제4조4항6호바목1의다) 표에 “1호다목6)의 경우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호다목6)의 경우	728~748 MHz	-88 dBm 이하	100 kHz
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

제4조4항6호바목1의다) 표에 “1호다목6)의 경우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호다목6)의 경우	470 MHz~703 MHz	-26.2 dBm 이하	6 MHz
	758 MHz~773 MHz	-32 dBm 이하	1 MHz
	773 MHz~803 MHz	-50 dBm 이하	1 MHz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이동통신용 무선설비)	제4조(이동통신용 무선설비)
① ~ ③ (생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주파수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.④ ----- -----
1. 공통조건	1. -----
가. ~ 나. (생략)	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주파수대역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	다. ----- -----
1) ~ 4) (생략)	1) ~ 4) (현행과 같음)
5) 2500 MHz~2540 MHz(사업자 방향), 2620 MHz~2660 MHz(가입자 방향)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는 점유주파수대역폭 5 MHz, 10 MHz, 15 MHz 또는 20 MHz를 사용할 것	5) 2500 MHz~2550 MHz(사업자 방향), 2620 MHz~2670 MHz(가입자 방향) ----- ----- -----
<신 설>	6) 728 MHz~748 MHz(사업자 방향), 783 MHz~803 MHz(가입자 방향)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는 점유주파수대역폭 5 MHz, 10 MHz, 15 MHz 또는 20 MHz를 사용할 것
2.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	2. -----
가. ~ 마. (생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바. (생략)	바. (현행과 같음)
1)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 dB	1) -----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m 초과인 경우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2)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dB m 초과 24 dBm 이하인 경우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3)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dB m 이하인 경우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3. 기지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 조건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4.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. ~ 마. (생략) 바. 제4호라목 및 마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을 만족할 것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파수대역</th> <th>불요발사 평균전력</th> <th>분해대역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1호다목6)의 경우</td> <td>728~748 MHz</td> <td>-96 dBm 이하</td> <td>100 kHz</td> </tr> <tr> <td>753~771 MHz</td> <td>-48.3 dBm 이하</td> <td>100 kHz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) ----- -----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파수대역</th> <th>불요발사 평균전력</th> <th>분해대역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1호다목6)의 경우</td> <td>728~748 MHz</td> <td>-88 dBm 이하</td> <td>100 kHz</td> </tr> <tr> <td>753~771 MHz</td> <td>-48.3 dBm 이하</td> <td>100 kHz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3) ----- -----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파수대역</th> <th>불요발사 평균전력</th> <th>분해대역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1호다목6)의 경우</td> <td>728~748 MHz</td> <td>-88 dBm 이하</td> <td>100 kHz</td> </tr> <tr> <td>753~771 MHz</td> <td>-48.3 dBm 이하</td> <td>100 kHz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3. 기지국 수신장치의 조건 가. 부차적 전파발사 조건 (현행과 같음) 나. 수신 선택도는 753 MHz 이상 771 MHz 이하에서 88.5 dB 이상일 것</p> <p>4. -----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바. ----- ----- -----</p>	구분	주파수대역	불요발사 평균전력	분해대역폭	1호다목6)의 경우	728~748 MHz	-96 dBm 이하	100 kHz	753~771 MHz	-48.3 dBm 이하	100 kHz	구분	주파수대역	불요발사 평균전력	분해대역폭	1호다목6)의 경우	728~748 MHz	-88 dBm 이하	100 kHz	753~771 MHz	-48.3 dBm 이하	100 kHz	구분	주파수대역	불요발사 평균전력	분해대역폭	1호다목6)의 경우	728~748 MHz	-88 dBm 이하	100 kHz	753~771 MHz	-48.3 dBm 이하	100 kHz
구분	주파수대역	불요발사 평균전력	분해대역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호다목6)의 경우	728~748 MHz	-96 dBm 이하	100 kHz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753~771 MHz	-48.3 dBm 이하	100 kHz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주파수대역	불요발사 평균전력	분해대역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호다목6)의 경우	728~748 MHz	-88 dBm 이하	100 kHz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753~771 MHz	-48.3 dBm 이하	100 kHz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주파수대역	불요발사 평균전력	분해대역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호다목6)의 경우	728~748 MHz	-88 dBm 이하	100 kHz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753~771 MHz	-48.3 dBm 이하	100 kHz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	점유주파수 대역폭	주파수대역	불요발사 평균전력	분해대역폭
	1호가목6)의 경우	470 MHz~703 MHz	-26.2 dBm 이하	6 MHz
		758 MHz~773 MHz	-32 dBm 이하	1 MHz
		773 MHz~803 MHz	-50 dBm 이하	1 MHz
사. (생략)	사. (현행과 같음)			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			
6.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의 조건	6. -----			
가. 주파수허용편차는 가입자 방향은 제2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하고, 사업자 방향은 제4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	-----			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			
나. 안테나공급전력은 가입자 방향은 제2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하고, 사업자 방향은 제4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	나. -----			
다. ~ 마. (생략)	----- 2 W 이하일 것			
바. 제6호라목 및 마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을 만족할 것	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			
1) 가입자 방향의 경우	바. -----			
가)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 dBm 초과인 경우	1) -----			
가)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 dBm 초과인 경우	가) -----			
<신 설>				
나)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	-----			
	구분	주파수대역	불요발사 평균전력	분해대역폭
	1호가목6)의 경우	728~748 MHz	-96 dBm 이하	100 kHz
나)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	-----			

dBm 초과 24 dBm 이하인 경우			
<신 설>			
다)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dBm 이하인 경우			
2) 사업자 방향의 경우			
<신 설>			
7. (생략)			
-----			
구분	주파수대역	불요발사 평균전력	분해대역폭
1호가목6)의 경우	728~748 MHz	-88 dBm 이하	100 kHz
다) -----			
2) -----			
구분	주파수대역	불요발사 평균전력	분해대역폭
1호가목6)의 경우	728~748 MHz	-88 dBm 이하	100 kHz
-----			
점유주파수 대역폭	주파수대역	불요발사 평균전력	분해대역폭
1호가목6)의 경우	470 MHz~703 MHz	-26.2 dBm 이하	6 MHz
	758 MHz~773 MHz	-32 dBm 이하	1 MHz
	773 MHz~803 MHz	-50 dBm 이하	1 MHz
7. (현행과 같음)			